



학생 · 학교 · 마을이 함께 만드는 행복 부천교육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관리 지침



2022. 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목 차

I.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계획	[1~9]
1. 목적	1
2. 관련 법률 및 규정	1
3. 부천시 중학군 안내	2
4. 배정대상	4
5. 배정원칙	4
6. 배정절차	6
II.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III. 중학교 배정업무 추진 일정	[11]
IV. 배정업무 안내	[12~25]
1. 일반배정	12
2. 선배정	13
3. 특별선배정	14
4. 특별배정	15
5. 대상자별 구비서류 안내(학생 및 학부모)	16
6. 배정원서 관련 제출 서류 안내(교사 참고내용)	20
7. 배정원서 작성방법 세부내용 안내	23
8. 학교 코드	25
V. 위장전입자 처리 및 학부모 안내	[26]
1. 위장전입자 처리	26
2. 학부모 안내	26
VI. 재배정	[27~29]
1. 전입	27
2. 전출	29
VII. 질문 및 답변	[30~34]
VIII. 서식	[35~85]
붙임(1~4)	[86~94]



1. 목적

부천시 관내 중학교 입학 예정자의 중학교 배정지침을 수립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관련 법률 및 규정

가. 헌법 제31조

나.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 방법) 내지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사.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학력인정)

타.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경기도 교육청 고시

파. 경기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배정 계획

3. 부천시 중학군 안내

중학군	지원 가능 중학교	대상 초등학교	
상동중학군 (4교)	부인중, 상동중, 상일중, 석천중	부인초, 상동초, 상미초, 상원초, 상인초, 상일초, 석천초	
중동중학군 (10교)	계남중, 내동중, 부명중, 부천부곡중, 부천부흥중, 부천중, 상도중, 심원중, 중원중, 중흥중,	계남초, 부광초, 부명초, 부천부곡초, 부천부흥초, 부천삼정초, 부천신흥초, 부천중앙초, 부천중원초, 부천초, 상도초, 상지초, 송내초, 신도초, 심원초, 약대초, 옥산초, 중동초, 중흥초	
		부일초	부천동 11통 5~7반, 62통 4반 중 196~207번지, 65통 5반
		부천북초	[심곡동 44통 8반, 47~48통, 49통 1~4반, 51~52통, 56통], [부천동 1통, 2통 1~2반, 11통 1~4반] 오정·역곡중학군 중 소명여중만 추가지원
		부천서초	대산동 제외(대산동은 송내중학군)
		심곡초	심곡8통에 한하여 오정·역곡중학군 중 소명여중만 추가지원
		원미초	중동중학군 지원 및 오정·역곡중학군 중 소명여중만 추가지원
송내중학군 (3교)	부천남중, 부천여중, 성주중	도원초, 부천남초, 부천송일초, 성주초, 솔안초	
		부천서초	대산동

중학군	지원 가능 중학교	대상 초등학교	
오정·역곡 중학군 (9교)	부천여월중, 까치울중, 수주중, 덕산중, 성곡중, 도당중, 원미중, 역곡중, 소명여중	고강초, 고리울초, 까치울초, 도당초, 동산초, 부천 대명초, 부천덕산초, 부천수주초, 부천여월초, 부천 역곡초, 부천원일초, 성곡초, 오정초, 원종초	
		동곡초	범안동 47~49통 제외
		부원초	소사·옥길중학군 지원 및 오정·역곡중학군 중 소명여중만 추가지원
		부일초	부천동 11통 5~7반, 62통 4반 중 196~207번지, 65통 5반 제외
		부천동초	소사본동 12통(1~3반), 범안동 29~30통 제외
		부천북초	[심곡동 44통 8반, 47~48통, 49통 1~4반, 51~52통, 56통], [부천동 1통, 2통 1~2반, 11통 1~4반] 제외
		심곡초	중동중학군 지원 및 심곡8통에 한하여 오정·역곡중학군 중 소명여중만 추가지원
		원미초	중동중학군 지원 및 오정·역곡중학군 중 소명여중만 추가지원
소사·옥길 중학군 (7교)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부천일신중, 소사중, 부일중, 옥길중, 범박중	범박초, 복사초, 부원초, 부천부안초, 부천양지초, 부천일신초, 옥길산들초, 옥길버들초, 소사초, 소안초, 소일초, 창영초, 시흥 계수초	
		동곡초	범안동 47~49통
		부원초	오정·역곡중학군 중 소명여중만 추가지원
부천동초	소사본동 12통(1~3반), 범안동 29~30통		

4. 배정대상

- 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중학교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전 가족이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 나. 부천시 거주자 중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각호 해당자)
- 다. 경기도 시흥시 계수초등학교(시흥시 계수동 거주) 졸업(예정)자 중 배정 희망자 및 군인 자녀로서 인천금마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성동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마. 타 시·도 및 타 시·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그 지역 중학교 배정을 포기하고, 2월 말까지, 전 가족이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5. 배정원칙

- 가. 중학교 입학대상자는 부천시 5개의 중학군(상동중학군, 중동중학군, 송내중학군, 오정·역곡중학군, 소사·옥길중학군)에 나누어 배정한다.
- 나. 본배정 시 중학군 내 거주자는 해당 중학군에 속한 중학교 중 **1. 지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며, 정원보다 지망 인원이 많을 경우 **2. 근거리교 순위 3. 초등학교 전·입학일자 4. 컴퓨터 추천 순서**로 배정한다.
- 다. 재배정 시 원서접수 이전일 기준 배정 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지원자가 결원보다 적은 경우, 컴퓨터 추천 없이 전원 배정되고 결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 추천으로 배정한다.
 - ※ 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해 학생이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배정 학급 증설 가능
- 라. 근거리교 순위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용역개발 의뢰한 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로만 반영한다.
- 마. 위장전입 등 실거주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배정을 취소하고, 배치 여력이 있는 중학교에 임의로 배정한다.

※ 학교장 책임하에 위장전입 등 실거주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 입학 후 발견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등 전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바. 기 배정자(전년도에 입학 포기한 자 포함)는 이전에 배정받은 중학교에 재배정한다.

사. 일반배정 대상자

- 1) 배정원서 작성일 현재 거주지가 소속된 중학군 내의 모든 중학교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원하여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른 중학군으로 거주지 이전 시, 초등학교를 전학하지 않고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
 예) 상동중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중동중학군 내 A초를 졸업하는 학생은 상동중학군 중학교에 지원하여야 함

※ 배정원서 작성 시 학교장 책임하에 실거주지를 철저히 확인

- 2) 배정원서 작성시 통학 편의 및 근거리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희망에 의해 중학군 내 순위를 정하여 지망한다.

※ 1근거리교와 1지망교가 불일치 할 경우, 1지망교가 미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거리 상위 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되는 방식에 의해 탈락 할 확률이 높으므로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배정원서 작성

3) 쌍둥이 배정

- 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맏이와 동생 모두 배정원서의 ‘쌍둥이’ 지원란을 작성하되, 쌍둥이 간 지망 중학교 순위는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맏이가 배정된 중학교에 동생이 추가배정 되거나 동반 탈락한다.
- 나) 남녀 쌍둥이가 같은 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원서작성 시 남녀 공학 학교를 우선 지망하고, 남중, 여중은 가장 마지막에 지망하여야 하며, 단성학교의 경우 남녀 쌍둥이는 동일교 배정이 불가하다.

- 예시) 송내중학군에서 거주하는 여학생 A와 남학생 B가 남녀 쌍둥이이며 여학생 A가 맏이일 경우 부천여중을 가장 마지막 지망에 하여야 함
 1지망: 성주중 2지망: 부천남중 3지망: 부천여중
 1지망: 성주중 2지망: 부천여중 3지망: 부천남중
 ※ 부천남중은 남녀공학 학교임

아. 우선배정 대상자

- 1) 우선배정 대상자는 선배정(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정폭력 피해 학생), 특별선배정(학교폭력 관련자, 학교 부적응자 등), 특별배정(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자녀, 군인 자녀)이 있으며, 심의 결과 및 서류 확인 결과를 통해 배정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우선배정 대상자는 관련 규정 및 배정관리 별도 지침에 따라 배정한다.

자. 거주지 이전 예정자

1) 배정원서 추가접수 기간 마감 전까지 거주지 이전이 확정된 경우, 학교장의 증빙 서류 확인 후 거주지 이전 예정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대상자: 2023. 2월 말까지 거주지 이전 완료가 예정된 자

(2) 구비서류: <서식 1-10>, <서식 1-11> 및 증빙서류(거주지 이전주소 등본 가능)

※ 거주지 이전으로 원서접수 후 거주지 미이전 시 위장전입 처리

차.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1) 배정원서 추가접수 기간 마감 전까지 거주지 이전이 확정된 경우, 학교장의 증빙 서류 확인 후 거주지 이전 예정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대상자: 2024. 2월 말까지 거주지 이전 예정인 자

(2) 구비서류: <서식 1-10>, <서식 1-11> 및 증빙서류

카. 배정원서 작성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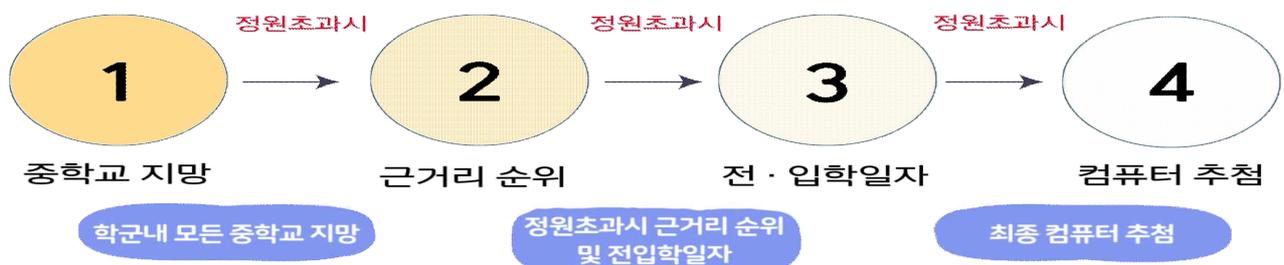
1)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배정 원서를 작성하고, 학교에서 부천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제출 및 접수한다.

2)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지원자는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배정원서를 작성하고, 개별 제출 및 접수한다.

3) 인천금마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제17보병사단의 군인 자녀는 인천북부 교육지원청에 원서접수하고,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이를 부천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4) 시흥 계수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원서접수 하고 시흥교육지원청은 이를 부천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6. 배정 절차



가. 세부 배정 절차

- 1) 순위①(희망교 지망): 제1지망 인원이 해당 중학교 신입생 정원보다 적으면 전원 배정한다. 정원 미달 인원은 차순위 지망자를 대상으로 배정 절차를 적용한다.
- 2) 순위②(근거리교 순위 배정): 제1지망 인원이 정원보다 많으면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 3) 순위③(전·입학 일자 순위 배정): 제1지망 근거리교 순위가 같은 학생이 정원보다 많으면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전·입학 일자(취학 및 재취학 포함)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 4) 순위④(추첨 배정): 제1지망 순위①~③에 따른 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망자가 해당 중학교 정원보다 많으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추첨에 의하여도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차순위(2지망 이상) 중학교에 대하여 동일한 배정 절차를 적용한다.

※ 한번 배정받은 중학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중학교 입학 후에는 같은 학군 내에서의 전학이 불가함

나. ‘거리 측정’ 방법

- 1) 학생의 실거주지에서 학군 내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 2) 아파트 동 출입구 또는 단독 주택 대문에서 중학교 정문 또는 후문까지 도보 통행로의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제1근거리, 제2근거리, ... 5근거리까지 부여하며 6근거리부터는 동일 근거리로 간주한다. *5근거리 학교까지만 거리 측정

※ 단, 아파트 동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 동 중앙에서 측정

- 3) 통상적인 통행로 중 가장 가까운 길을 측정 하되, 그 길은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용역개발 의뢰한 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로만 반영한다.
- 4) 1근거리 중학교와 2근거리 중학교까지의 거리차이가 100m 이내면 동일근거리로 간주하여 선 희망 중학교에 1근거리를 부여하는 것을 *공동근거리라 하며 10m 단위로 측정한다. (10m 미만은 버린다.)

* 공동근거리는 학군 내 중학교 적정규모 학급 유지를 위하여 적용 또는 미적용 가능

- 5) 상동중학군은 공동근거리를 미적용하고 1m 단위로 측정한다.
- 6) 6학년 담임교사가 근거리 중학교 확인 시스템에 학생 주소를 입력하고 근거리교 순위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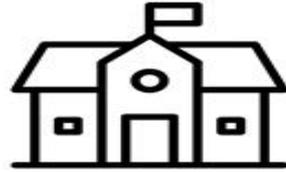
다. 근거리 순위 부여 예시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D중학교



학생이름	A중학교 (1지망)	B중학교 (2지망)	C중학교 (3지망)	D중학교 (4지망)
[가]학생	250M(1근)	900M(2근)	1,500M(3근)	2,300M(4근)
[나]학생	1,300M(2근)	1,000M(1근)	2,000M(4근)	1,500M(3근)
[다]학생	1,500M(1,2근)	1,580M(1,2근)	1,800M(3근)	2,100M(4근)

- 1) [가]학생의 경우 거주지에서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D중학교 순으로 근거리인 경우로 1지망을 A중학교에 지망한 경우 정원초과 시 근거리 경합에서 유리함
- 2) [나]학생의 경우 B중학교가 가장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A중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1지망에서 정원 초과 시 근거리 경합에서 후순위로 적용받아 불리함
- 3) [다]학생의 경우(공동근거리) A중학교와 B중학교 거리 차이가 100m이내 (80m)로 B학교를 1지망 할 경우, B중학교가 1근거리가 되며, A학교는 자동으로 2근거리로 적용됨

라. ‘전·입학 일자 순위’ 부여

- 1) ‘전·입학’ 이란, 학교생활기록부 상 입학, 취학, 재취학, 전입학 등의 학적을 말한다.

※ 전입학은 전학을 말함

- 2)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전입학 일자를 기준일로 한다.
- 3) 전학생이 아닌 경우, 입학 일자를 기준일로 한다.
- 4) 취학은 취학 일자, 재취학은 재취학 일자를 기준일로 하며, 전입학 일자로 간주한다.
- 5) 부천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맨 마지막 순위를 부여한다.
- 6) 입학일자는 입학 연도 3월 2일, 졸업일자는 졸업 연도 2월 28일로 한다.

※ 주말·공휴일일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7) 같은 학군 내 전학인 경우, 이전학교의 전·입학 일자로 순위를 적용한다.
- 8) 다른 중학군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전학하지 않고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정원 초과 시 맨 마지막 순위를 부여한다.
- 9) 학군 간 경계에 있는 초등학교(동곡초, 부일초, 부천동초, 부천북초, 부천서초)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거주지 이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학구도 안내 서비스’ 사이트에서 현주소와 예전 주소의 중학군을 확인하고 두 주소 간 학군이 동일하면 6)번을 적용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7)번을 적용한다.

※ 거주지 이전을 하여 다른 중학군으로 가더라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변동되지 않아 전학이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마. 컴퓨터 추첨 방법

- 1) 모든 추첨은 다음의 과정으로 컴퓨터 추첨한다.
- 2) 모든 지원자에게 6단위의 ‘지원자 번호’ 를 부여하고, 추첨 대상 학생을 지원자 번호 순서로 정리한다. (학교번호 2자리, 학급번호 2자리, 출석번호 2자리)
- 3) 추첨 시작 번호(1~20)와 추첨 간격 번호(11~19)를 정하여 컴퓨터로 추첨한다.
- 4) 추첨 시작번호, 추첨 간격번호는 공개추첨한다.
- 5) 컴퓨터에서 시작 번호를 기준으로 간격 번호를 계속 더해가며 배정할 인원만큼 추첨한다.
- 6) 본배정 및 재배정의 추첨 시작 번호 및 간격 번호는 각각 추첨한다.



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가. 위원회는 상동중학군, 중동중학군, 송내중학군, 오정·역곡중학군, 소사·옥길중학군을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여 교육장이 임명·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일부터 다음 연도 위원회 구성 전까지 운영한다.
 - 라. 위원회는 학교별·지역별 특이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 업무 범위
 - 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중학교 배정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및 신입생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 2) 전·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 3)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특별선배정 등)
 - 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 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마.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Ⅲ 중학교 배정업무 추진 일정



업무 내용	세부 계획	시행 일정	대상	장소	비고
1차 입학추첨 관리위원회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관리 지침 수립	2022. 9. 29.(목)	입학추첨관리 위원회 위원	2층 도담실	
학부모 안내	학생별 근거리 중학교 순위 안내 및 의견수렴	2022. 9월	학부모	-	
교사 대상 설명회	중학교 배정지침 및 원서접수 설명회	2022. 10. 13.(목)	초등학교 6학년 교사 전체	1층 소담방 (Zoom)	
학부모 서류제출	학교에서 안내받은 원서, 등본 등 관련 서류 제출	2022. 10. 17.(월) ~ 10. 21.(금)	학부모	초등학교	
주소 입력 등 근거리 산출	등본(부동산계약서)주소 근거리시스템 입력	2022. 10. 24.(월) ~ 10. 28.(금)	초등학교 6학년교사 전체	초등학교	
본배정 원서접수	특수교육대상자	2022. 10. 31.(월) ~ 11. 4.(금)	해당자	2층 도담실	
	체육특기자		해당자		
	검정고시 합격자		해당자		
	일반배정자		관내 초등학교 64교 및 계수초		
특별선배정 신청 및 본배정 원서 추가접수	특별선배정 대상자 공문 신청 및 본배정 원서접수 이후 거주지 이전을 하거나 예정인 학생 원서 추가접수 ※ 단순 정정 불가	2022. 10. 31.(월) ~ 11. 11.(금) 특별선배정 접수 ~ 11. 25.(금) 원서 추가접수	관내 초등학교 64교 및 계수초 중 해당자	2층 도담실 (원서접수 기간 이후엔 1층 기획경영과)	
2차 입학추첨 관리위원회	특별선배정 등 사안 발생시 심의	2022. 11. 22.(화)	입학추첨관리 위원회 위원	2층 도담실	
컴퓨터 추첨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실시(컴퓨터 추첨)	2022. 12. 20.(화)	입학추첨관리 위원회 위원, 학부모, 교사	5층 청백마루홀	
본배정 결과 발표	배정통지서 교부	2022. 12. 28.(수)	6학년 부장교사	5층 청백마루홀	
예비 소집일	중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2023. 1. 4.(수)	관내 중학교 33교	배정중학교	
신입생 등록	중학교 신입생 등록	2023. 1. 4.(수)~ 1. 6.(금)	관내 중학교 33교		
재배정 원서접수	일반배정자 재배정 원서접수	2023. 1. 16.(월) ~ 1. 19.(목)	타시도 → 부천 재배정 대상자	지하 1층 디딤터	
재배정 결과 발표	일반배정자 재배정 통지서 배부	2023. 1. 26.(목)	타시도 → 부천 재배정 대상자	1층 기획경영과	
재배정 학생 등록	일반배정자 재배정 학생 등록	2023. 1. 26.(목) ~ 2. 3.(금)	관내 중학교 33교	배정중학교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IV 배정업무 안내



1. 일반배정

가. 학교별 원서접수 일정

접수 일자	접수 시간	대상 학교(학급수)	비 고
10월 31일(월)	10:00~17: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부천초(3), 옥산초(1), 오정초(4)	21교 (51학급) · 원서 수정·보완 접수 11. 7.(월) ~ 10.(목)
		복사초(1), 부명초(3), 부원초(2), 부천신흥초(3), 솔안초(2), 송내초(2)	
		까치울초(2), 동산초(2), 범박초(4), 부광초(2), 부일초(2), 부천삼정초(2), 부천양지초(3), 부천원일초(3), 상도초(3), 부천중원초(2), 상미초(2), 상지초(3)	
11월 1일(화)	10:00~17: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도원초(3), 부인초(3), 부천동초(3), 부천부곡초(3), 부천부흥초(5), 중동초(5) 부천역곡초(4), 부천중앙초(5), 소안초(3), 부천수주초(3), 부천부안초(3)	14교 (51학급) · 원서 수정·보완 접수 11. 7.(월) ~ 10.(목)
		고강초(4), 고리울초(3), 부천남초(4)	
11월 2일(수)	10:00~17: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부천서초(5), 부천여월초(4), 상원초(4), 성곡초(3), 신도초(5), 심곡초(3), 심원초(4)	10교 (50학급) · 원서 수정·보완 접수 11. 7.(월) ~ 10.(목)
		동곡초(4), 옥길산들초(11), 옥길버들초(7)	
11월 3일(목)	10:00~17: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부천덕산초(5), 부천송일초(5), 상동초(5), 소사초(6), 중흥초(6), 소일초(2) 성주초(5)	10교 (52학급) · 원서 수정·보완 접수 11. 7.(월) ~ 10.(목)
		부천대명초(5), 부천북초(6), 부천일신초(7)	
11월 4일(금)	10:00~17: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원종초(5), 창영초(4), 약대초(2), 원미초(5)	10교 (51학급) · 원서 수정·보완 접수 11. 7.(월) ~ 10.(목)
		도당초(6), 상인초(8), 상일초(7)	
		석천초(6), 계남초(7), 계수초(1)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부천시 관내 64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

가) 원서 교부 장소: 각 초등학교

나) 접수 기간: 각 초등학교 지정일

2)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지원자

가) 원서교부 : 부천교육지원청(2층 도담실)

나) 접수기간 : 2022. 10. 31.(월) ~ 2022. 11. 4.(금)

다) 접수시간 :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3) 시흥 계수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시흥 계수초등학교 졸업자 중 부천시 관내 중학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교에서 원서접수하고 학교는 부천교육지원청으로 원서 인편 제출

2. 선배정

가. 일반배정자 중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정폭력 피해 학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별도로 선배정 하며 이는 비공개로 처리한다.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중학교 배정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강제전학 조치받은 학생)에 대한 중학교 배정 방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조치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으로 부천교육지원청에 명단 통보된 학생(학년 간 또는 학교급이 다른 경우 포함) 대상

2) 피해 학생과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이 동급생인 경우

- 피해 학생과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각각 다른 중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의 중학교를 먼저 배정하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중학교를 지망하였을 경우 그 지망은 자동으로 제외처리 된다.

3) 피해 학생과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의 학년 또는 학교급이 다른 경우

- 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고학년일 경우, 피해 학생의 중학교 배정 시 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속된 학교 위치와 피해 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저학년일 경우, 2)번과 같이 배정한다.

4) 타 시·도 및 타 시·군으로 전학 조치 된 가해 학생이 재배정 등을 통하여 다시 부천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받고자 할 때나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일 시에도 2), 3)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다. 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중학교 배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장이 요청하였을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선배정 하며, 이는 취학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3. 특별선배정

가. 법령으로 정한 선배정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학교폭력 관련자나 학교 부적응자(신체허약자 등)로서 교육환경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은 특별선배정 할 수 있다.

나.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배정

- 특별선배정은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배정 할 수 있다.

1) 대상

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교폭력 관련자 중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까진 되지 않았으나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나) 학교 부적응 학생

- 학교 부적응, 신체 허약 등의 이유가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다. 교육장 직권 조정 배정

1) 학교장의 요청으로 특별선배정 대상이지만 사안의 특성상 공개될 경우 학생·학부모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학교장의 요청으로 특별선배정 대상이지만 사정상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4. 특별배정

가.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체육특기자 심사를 통하여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관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체육 담당 장학사가 주관한다.

나.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심사를 통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주관한다.

다. 다자녀 가정 학생

- 1) 학년도 개시일 기준(2023.3.1. 현재) 18세 미만(2005.1.1. 이후 출생)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이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같은 학군 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 예정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같은 중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

2) 대상

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라) 입양된 자녀는 입양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고,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미포함

라. 국가유공자 자녀

- 1)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중학군 지망한 중학교 입학 정원의 3% 내에 우선 배정한다.
- 2)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경기남부보훈지청에 확인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확인」은 생략하며,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한다.
- 3)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학교는 학부모에게 알린 후 배정원서를 제출받는다.

마. 인천금마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군인 자녀

- 인천금마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제17보병사단 군인 자녀 중 부천시 관내 중학교(성주중)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군부대의 협조공문이 필요하며, 인천금마초등학교(인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부천교육지원청으로 이관처리 하여야 한다.

5. 대상자별 구비서류 안내(학생 및 학부모)

구분	대상자	구 비 서 류	비 고
공 통 영 통	공 통 (필수) 서 류	<p>① 배정 원서<서식 1-3> ② 주민등록표 등본<전 가족(부, 모, 학생 모두) 등재> - 전 가족 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 중 1인 등재 시는 전 가족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유에 따라 반드시 전 가족 미등재 시 사유별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장전입 조사 등 적발 시 무관용 처리 예정)</p> <p>※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시 유의 사항 - <u>2022.10.1. 이후 발급한 등본</u> - <u>전 가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u> - <u>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u></p>	
일 반 배 정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가 다른 학생 (전가족이 미등재된 경우)	<p>① 전 가족 미등재 사실 확인서<서식1-6> ② 거주 사실 확인서<서식1-9> ③ 전 가족 미등재 사유별 추가서류 - 미등재 사유 중복 시 각각의 서류 모두 제출 ※ 서류 제출 거부 시 임의 배정 될 수 있음</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부모 중 1명만 학생과 같이 등재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제출: 등본에 미등재 된 학부모 주민등록표 등본 ·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미인정 시 제출받은 등본들을 비교하여 학급수가 적은 학교가 1근거리인 등본으로 반영 <p>1. 부모 이혼 또는 사망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명의) 1부 <p>2. 별거 중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서류: 학부모 의견서<서식 3-4>, 담임 확인서 <서식 3-5> 모두 제출 <p>3.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친 관내 사업(직장)인 경우 미인정 - (사업가(농업, 어업 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1부 </div>	모든 서류는 공지일 이후 발급 하여야 함

구분	대상자	구 비 서 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척 집(조부모 등), 지인 집에 학생이 등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서류: 양부모 모두 등재된 등본 ※ 부친 관외에 양부모 모두 거주할 때 한하여 인정 ※ 부친 관내에 한부모라도 거주 시 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미인정 시 제출받은 등본들을 비교하여 학급수가 적은 학교가 1근거리인 등본으로 반영 ○ 조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서류: 한부모가정 증명서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부모가 사망하고 후견인이 양육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 동의서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1부 ○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자 초본 1부 	
	<p>부천시 관내 거주지 이전 예정자 (거주지 이전이 증명되는 서류) ※ 2023.2월말 거주지 이전 예정자까지만 반영 접수기간 : (원서접수종료 후 ~ 수정 기간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통(필수)서류 ② 입주 예정자 확인 각서<서식1-10> ③ 입주예정지 중학교배정신청서<서식1-11> ④ 사유별 추가서류(반드시 사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아파트 분양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임대)계약서 사본(학교장 원본대조필) ※ 신규아파트 분양에 한해 2024. 2월 말까지 적용 ○ 신규주택입주예정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서(매매계약서) 사본(학교장 원본대조필) ○ 전세 입주예정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 계약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구분	대상자	구 비 서 류	비 고
	졸업자	① 공통(필수)서류 ② 졸업자 중학교 미진학 확인서<서식 1-12>	
	외국 학생	○ 외국인 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등본을 대신하는 서류로 양 부모, 학생 모두 발급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쌍둥이	○ 공통(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명의)	
	검정고시 합격자	① 공통(필수)서류 ② 검정고시 합격증 1부 ③ 신분증 지참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선 배 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	○ 공통(필수)서류 ○ 선배정(학교폭력 피해 학생) 신청서<서식 3-1> ○ 증빙자료(강제전학 여부, 가해·피해 학생 소속 적시)	학교에서 공문 신청
	가정폭력 피해 학생	○ 공통(필수)서류 ○ 선배정(가정폭력 피해 학생) 신청<서식 3-2>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학교에서 공문 신청
특 별 선 배 정	학교 폭력 관련자 및 부적응자(신체 허약자) (선배정 비대상)	○ 공통(필수)서류 ○ 특별선배정 신청공문<서식 3-3> ○ 학부모 의견서<서식 3-4> ○ 담임 의견서<서식 3-5> ○ 학교장 의견서<서식 3-6> ○ 회의록 사본<서식 3-7> ○ 진단서, 상담일지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중학교입학추천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배정

구분	대상자	구 비 서 류	비 고
특 별 배 정 (우선 배정)	체육 특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 원서<서식 1-3> ※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에 체육 특기자 반드시 체크 후 종목명 기재 - 심사 관련 서류 (<서식 4-1 ~ 4-9>는 제출 불요 (해당 부서에 별도 확인 예정))
	특수교육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 원서<서식 1-3> ※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에 특수 교육대상자 반드시 체크 - 심사 관련 서류 (<서식 5-1 ~ 5-6>는 제출 불요 (해당 부서에 별도 확인 예정))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필수)서류 ※ 필요시 사유별 추가서류 징구 ○ 다자녀 가정 학생 특별배정 신청<서식 6> ○ 형제·자매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재학증명서 ※ 등본으로 세 자녀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명의) 추가 제출 	<p>원서에 다자녀가구 자녀 반드시 체크</p>
	국가유공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필수)서류 ○ 국가보훈처(경기남부보훈지청) 통보명단으로 확인 ※ 통보명단은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일괄 확인 ※ 명단 누락자인 경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p>원서에 국가유공자 자녀 반드시 체크 후 보훈번호 기재</p>

6. 배정원서 관련 제출 서류 안내(교사 참고내용)

1) 배정원서 서류 일체는 공문<서식1-1, 1-2, 1-3>과 함께 6학년 부장교사가 직접 제출하며, 학교별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다.

2) 편철 시 서식별로 묶지 않고 ‘학생별’로 묶는다.(반별로 편철)

ex) <A학생 서식> → <B학생 서식> … <Z학생 서식>

3) 모든 서식은 낮은 숫자가 위로 가도록 묶는다.

ex) <서식 1-2>가 가장 위에 위치, <서식 1-12>은 가장 아래 위치

- 공통 총괄표 등 제출 서식 편철 순서(맨 위에 위치)

순	서식 번호	서식 제목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비고
1	<서식 1-2>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표지	○	
2	<서식 1-4>	중학교 입학지원자 총괄표	○	
3	<서식 1-5>	특이 학생 명단 현황	○	
4	<서식 1-13>	위장전입 의심 대상자 명단	X	해당 시

- 일반배정자 편철 순서

순	서식 번호	서식 제목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비고
1	<서식 1-3>	중학교 배정원서	○	
2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학생 등재)	X	
3	<서식 1-6>	전 가족 미등재인 경우 관련 구비서류	X	해당 시 16p (구비서류 참조)
4	<서식 1-9>	거주 사실 확인서	X	전 가족 미등재 시
5	<서식 1-10>	입주 예정 확인 각서	X	해당 시
6	<서식 1-11>	입주 예정지 중학교 배정신청서	X	해당 시
7	구비서류	부동산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등	X	해당 시
8	<서식 1-12>	졸업자 중학교 미진학 확인서	X	해당 시

- 배정포기자 편철 순서(예체능 중학교 등 합격 시 배정 포기 가능)

순	서식 번호	서식 제목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비고
4	<서식 1-7>	부천시 관내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 포기자 명단	X	인편+공문
5	<서식 1-8>	배정 제외 학부모 동의서	X	인편+공문

- 선배정자(학교폭력 또는 가정폭력 관련학생) 편철 순서

순	서식 번호	서식 제목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비고
1	<서식 1-3>	중학교 배정원서	○	
2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학생 등재)	X	
3	증빙서류	서식<3-1>, 서식<3-2>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증빙자료	X	공문 제출

- 특별선배정자(선배정자는 아니지만 학폭 관련자 및 부적응자(신체허약자)) 편철 순서

순	서식 번호	서식 제목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비고
1	<서식 1-3>	중학교 배정원서	○	
2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학생 등재)	X	
3	<서식 3-4>	학부모 의견서	X	공문제출
4	<서식 3-5>	담임 의견서	X	공문제출
5	<서식 3-6>	학교장 의견서	X	공문제출
6	<서식 3-7>	회의록 사본	X	공문제출
7	구비서류	진단서, 상담일지 등 관련 증빙서류	X	공문제출

- 체육특기자 편철 순서

순	서식 번호	서식 제목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비고
1	<서식 1-3>	중학교 배정원서	○	종목명 기재
2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학생 등재)	X	

- 특수교육대상자 편철 순서

순	서식 번호	서식 제목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비고
1	<서식 1-3>	중학교 배정원서	○	
2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학생 등재)	X	

- 다자녀가구 자녀 대상 편철 순서

순	서식 번호	서식 제목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비고
1	<서식 1-3>	중학교 배정원서	○	
2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학생 등재)	X	
3	<서식 6>	다자녀 가정 학생 특별배정 신청서	X	
4	구비서류	형제·자매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재학증명서	X	

- 국가유공자 자녀 편철 순서

순	서식 번호	서식 제목	프로그램 출력 가능 여부	비고
1	<서식 1-3>	중학교 배정원서	○	보훈번호 기재
2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학생 등재)	X	

4) 학교에서는 중학교 배정원서 사본을 1부 출력하여 중학교 신입생 배정 종료 전까지 반드시 보관하도록 한다.

5) 배정원서 추가접수 신청(이관·정정·추가·삭제)

*추가접수 기간(학교 배정원서 취합 제출일 ~ 2022. 11. 25.(금)까지)

가) 배정원서 이관 신청<서식2-1>

- 배정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배정원서 추가접수 마감 전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입지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원서 이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나) 배정원서 정정 신청

- 배정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배정원서 추가접수 마감 전에 관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제출서류: 변경된 주소 등본 또는 <서식 1-10>, <서식 1-11>], <서식 2-2>, 원서 일체

※ 단순 정정은 불가(단순 정정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배정원서 취합 제출 전까지만 가능)

다) 배정원서 추가 신청

- 배정원서 ‘추가접수 마감 전’에 관내 또는 관외에서 전학을 온 학생이거나, 귀국 학생(재취학자)이 배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출서류: <서식2-3>, 원서 일체
- ※ 부천 배정 일정상 배정원서 추가접수 기간 종료 시 본배정은 불가하며, 추후 재배정을 통하여 중학교 배정을 받도록 한다.

라) 배정원서 삭제신청

- 제출서류: <서식2-4>, 전입지 재학증명서 또는 전입지 주소 등본
- (1) 배정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배정원서 추가접수 마감 전에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학 간 경우
- ※ 단, 타 시·도 및 타 시·군 지역교육청의 원서접수가 일정상 가능할 때 한하여 배정원서 삭제신청 가능
- (2) 배정원서 추가접수 마감 전에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우 (전학을 받은 학교에서는 배정원서 추가 신청<서식 2-3>을 해야 함)

7. 배정원서 작성방법 세부 내용 안내

- 1) 배정원서는 배정프로그램에서 작성하고, 서명이나 기타 증빙서류 작성 시에는 해당 서식에 검정 펜을 사용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 배정원서는 <서식1-3> 참조
- 2) ‘지원자 번호’란은 학교 코드 2자리, 반 코드 2자리, 번호 코드 2자리 총 6자리로 입력한다. 예) 고강초등학교 6학년 1반 1번 -> 240101
- 가) 졸업자인 경우, 반 코드는 00으로, 번호 코드는 일련번호 2자리로 입력한다.
- 나)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지원자의 경우에는 학교 코드는 99로, 반 코드는 00으로, 번호 코드는 일련번호 2자리로 입력한다.
- 3) 거주지 이전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등)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전 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 정확하게 기재한다.
- 4)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은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육특기자는 특기 종목을 기재한다.
- 5) 국가유공자 자녀란에는 보훈 번호를 기재, 검정고시 합격자란에는 합격증서 번호를 기재한다.

6) 쌍둥이일 경우

- 가) 쌍둥이 전형은 만이가 배정된 중학교에 동생이 추가배정 되거나, 동반 탈락하는 개념이므로, 희망에 의해 작성 또는 미작성 한다.
- 나) 이성 쌍둥이의 경우, 남녀공학 학교를 우선 지망하고, 남중 여중은 가장 마지막에 지망해야 한다.

7) 배정원서 검토 시 필수 확인 사항

- 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 일자 확인하여 위장전입 여부 검토

※ p.16<전 가족 미등재 시 제출서류>, p.87<붙임 2>확인

- 나) 지원자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여부

※ 위장전입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담임교사가 철저히 파악하여 확인할 것

- 다) 지원자의 주소지가 관외, 관내 타 학군, 해당 학군 내 위치 여부

- 위 내용은 전·입학 일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히 검토

8. 학교 코드

학교 코드 일람							
연번	학교명	코드번호	비고	연번	학교명	코드번호	비고
1	부천북초	01		35	부천부흥초	35	
2	부천남초	02		36	송내초	36	
3	부천동초	03		37	심원초	37	
4	부천서초	04		38	부광초	38	
5	소사초	05		39	상도초	39	
6	오정초	06		40	소일초	40	
7	약대초	07		41	신도초	41	
8	심곡초	08		42	부천중원초	42	
9	성주초	09		43	부천여월초	43	
10	부일초	10		44	부천역곡초	44	
11	부천부안초	11		45	부천수주초	45	
12	부천삼정초	12		46	까치울초	46	
13	원미초	13		47	상일초	47	
14	부원초	14		48	상인초	48	
15	동곡초	15		49	석천초	49	
16	상지초	16		50	상원초	50	
17	부천신흥초	17		51	옥산초	51	
18	원종초	18		52	솔안초	52	
19	범박초	19		53	부천일신초	53	
20	도당초	20		54	고리울초	54	
21	부천초	21		55	부천송일초	55	
22	도원초	22		56	상미초	56	
23	부천중앙초	23		57	부천양지초	57	
24	고강초	24		58	소안초	58	
25	부천덕산초	25		59	동산초	59	
26	복사초	26		60	성곡초	60	
27	부천대명초	27		61	부천원일초	61	
28	창영초	28		62	중동초	62	
29	계남초	29		63	옥길산들초	63	
30	부천부곡초	30		64	옥길버들초	64	
31	부인초	31		65	계수초	65	
32	상동초	32		99	부천교육지원청	99	
33	중흥초	33					
34	부명초	34					



1. 위장전입자 처리

가. 초등학교 : 학교별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서식 1-9>, <서식 1-13>를 배정원서 접수 시 제출

※ 위장전입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담임교사가 철저히 파악하여 확인할 것

나. 교육지원청 : 학교별 위장전입 의심 대상자와 배정원서 기간 중 발견한 대상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한다.

- 1) 입학 전 확인한 경우, 배정을 취소하고, 실거주지 학군 내 배치 여력이 있는 중학교에 임의로 배정
- 2) 입학 후 확인한 경우, 학기 중이더라도 실거주지 학군 내 배치 여력이 있는 중학교에 임의로 배정

2. 학부모 안내

가. 학부모 대상 원서접수 안내

- 1) 배정 방법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안내계획을 수립하고 배정원서 제출 전까지 설명회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안내를 하고 그 결과를 2022. 10. 28.(금)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 p.86<붙임 1>양식
- 2) 부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원서접수 안내 홍보 영상 링크 안내 및 참고
 - 가) <https://www.youtube.com/watch?v=PE58XWRUXV4> 링크 접속
 - 나) 또는 유튜브(www.youtube.com) 접속 후 검색창에 ‘부천교육지원청’ 검색



1. 전입

가. 대상: 타 시·도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그 중학교 배정을 포기한 학생이거나, 일정상 본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으로(귀국학생 등) 2022.11.28.(월) ~ 2023.1.19.(목) 재배정 원서접수 기간 종료까지 전 가족이 부천에 거주지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2023. 2. 28.까지 입주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일반 거주지 이전이 아닌 신규 공동주택 분양은 2024. 2. 28.까지 입주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부천시 관내에서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재배정 대상자가 아니며, 2023. 3월 이후 전학 처리하여야 함

나. 재배정 원서접수 일정 안내

1) 기간 : 2023. 1. 16.(월) ~ 1. 19.(목) (4일간)

2) 시간 :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3) 장소 : 부천교육지원청 지하 1층 디딤터

4) 구비서류

가) 부천시 중학교 재배정원서<서식 8-1> 1부

나) 중학교 배정통지서 원본 1부

다) 배정중학교 포기 확인서 또는 확인원 사본(각 교육지원청 양식) 1부

※ 배정포기서가 없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오는 학생은 <서식 8-4> 제출

라) 주민등록표 등본(전(全)가족 부천 거주 확인) 1부

마) 전 가족 미등재 확인서 <서식 1-6> 1부 (해당자)

- <서식1-6>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공통서류를 제출하고, 16p 전 가족 미등재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개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바) 신분증 및 도장(학부모, 학생 사인 가능) 지참 ※재배정은 학부모 사인 가능

5) 참고사항

- 지방 가능 학교 및 결원 발생 학교는 재배정 기간에 원서접수 장소에서 공개

다. 재배정 원서 접수 절차

1) <서식 8-1> 재배정원서 작성·지참 후 출신(졸업 예정) 초등학교에 방문

→ 관할 교육지원청 배정포기서 양식 작성

→ 초등학교 직인이 날인된 ①재배정 원서 및 ②배정포기서(배정포기 확인원 등) 원본 수령

※ 지역별로 배정포기서 양식 및 교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후 작성

2)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기준일: 2022. 11. 28. 이후 발급)

3) 재배정원서 접수 기간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부천교육지원청 방문 접수

4) 2023. 1. 26.(목) <중학교 재배정통지서> 부천교육지원청 방문 수령

5) 2023. 1. 26.(목) ~ 2. 3.(금) 배정된 중학교에 방문하여 신입생 등록

라. 재배정 방법(컴퓨터 추첨 등)

1) 재배정 원서접수 전일 기준(공휴일 미포함) 배정 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결원자 수만큼 재배정하며 지원자가 결원보다 적은 경우, 추첨 없이 전원 배정되고 결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 추첨한다.

2) 컴퓨터 추첨을 위한 지원자 번호는 원서접수 순으로 부여한다.

※ 선착순 배정 아님

3) 본배정 및 재배정의 추첨 시작 번호 및 간격 번호는 같은 날 각각 추첨하며, 학부모 입회하에 공개 추첨한다.

마. 재배정 통지서 교부

재배정 원서를 접수하고 배정지침에 따라 배정한 후, 2023.1.26.(목)에 재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

바. 유의 사항

1) 부천시 중학교 재배정 통지서를 받은 지원자는 즉시 배정받은 중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중학교는 재배정 통지서를 제출한 지원자를 신입생 수에 포함하고 입학 안내를 한다.

2. 전출

가. 전출 관리

부천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받고(배정통지서 수령), 중학교 입학일 이전에 타 시·도 및 타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으로 그 지역 중학교 입학에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학부모

가) 출신 초등학교에 부천시 관내 중학교 배정포기서<서식 8-3>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직인이 날인된 배정포기서를 수령한다.

나) 전출 지역 교육지원청 재배정원서를 출력하여 출신 초등학교 직인을 날인 받는다.

다) 기타 전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재배정 기간에 방문 접수한다.

※ 각 지역마다 재배정 일정 및 제출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전출 지역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고 진행하여야 함

2) 초등학교 : 학부모가 제출한 부천시 관내 중학교 배정포기서<서식 8-3>를 스캔한 후 각각 기 배정중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공문<서식 8-5> 발송하고, 졸업(예정)학생의 최종 배정 중학교를 관리한다.

※ 담임교사는 학생의 전출 시·도 및 시·군 교육지원청의 재배정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3) 중학교 : 초등학교로부터 접수한 부천시 관내 중학교 배정포기서<서식8-3>를 정확히 파악하여 2023학년도 신입생 수를 관리한다.



▣ 배정원서 작성 관련

Q. 배정원서 작성 시 지원자 번호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A. - 졸업예정자 : 학교 코드(2자리) - 반(2자리) - 번호(2자리)

예) 중흥초 6학년 1반 13번 학생의 경우 : 330113

- 졸업자 : 학교 코드(2자리) - 반(00) - 일련번호(2자리)

예) 중흥초 졸업생 지원자 중 2번째 학생의 경우 : 330002

Q. 배정원서 작성 시 전출생이 있는 경우에 지원자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정프로그램에서 교무업무시스템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전출생의 지원자 번호가 공백이 되는데, 이 경우 전출생의 지원자 번호는 비워두고 입력하면 됩니다.

예) 15번이 전출생인 경우 : 110314, 110316, 110317....

Q. 배정원서 작성 시 ‘입학 일자’, ‘전·입학 일자’ 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입학 일자’ 는 2017. 3. 2. 고정이므로 작성 대상이 아니며, ‘전학’, ‘취학’, ‘재취학’ 인 경우, 각각 ‘전학 일자’, ‘취학 일자’, ‘재취학 일자’ 를 작성합니다.

Q. 배정원서 작성 시 주소 기재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표 등본은 사전에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을 표기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 우측 전입일 변동 란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확인하시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갱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p87<붙임 2>확인

A. 이사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이사 전으로 매매·전세 계약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있는 이사 예정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일자는 언제여야 하나요?

A. 2022. 10. 1.(포함) 이후 발급하여야 합니다.

Q. 이사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는?

A. 배정원서 작성 당시 아직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전(월)세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이사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공식 계약서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위장전입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본배정 원서접수 종료 ~ 원서 추가접수 기간(2022. 11. 25.(금)까지)

Q.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부천이 아닌 경우 주소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A. (Case 1. 부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타 지역으로 진학)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관외 거주자’ 체크) 관외 중학교 배정 희망 시 배정통지서 수령 후 배정 포기서를 작성하고 2023. 1 ~ 2월 중 진학 예정인 타 지역 중학교 재배정 기간에 재배정 원서를 접수하여 배정받으시면 됩니다.

※ 재배정 시기는 교육지원청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A. (Case 2. 부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천 관내 중학교로 진학) 부천 관내 중학교 배정 희망 시 부천시 배정대상자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적용되어 학군 내 배치 여력이 있는 중학교로 임의 배정 됩니다.

Q. 배정원서 접수 후 타 시·도 및 타 시·군·구로 이사하였을 경우 중학교 배정업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Case 1. 타 시·도로 ‘전학’ 간 경우)

타 시·도 교육지원청과 전학 간 초등학교에 문의하여 배정원서 접수 기간을 확인하고 배정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전학 간 학교에서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다시 원서접수 하시고, 부천교육지원청에 배정원서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정원서 삭제란 문서 파기를 의미, 재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확인 후 신청)

A. (Case 2. 타 시·도 로 이사는 갔으나 전학하지 않고 부천 관내 초등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 중학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

학생이 부천에서 본배정을 받고 배정통지서를 수령하면 배정을 포기하고 전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배정 시기는 교육지원청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A. (Case 3. 타 시·도 중학교 재배정 기간이 끝난 후 이사하는 경우)

재배정 처리 이후는 중입배정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일단 배정받은 부천시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전학 처리하여야 합니다.

Q. 장기 해외어학연수 중인 학생의 경우 배정원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A. 출석 일수가 미달하여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가 아니므로 배정원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원 외 관리)

A. 출석 일수를 채우고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예외 없이 모두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중학교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Q. 외국 국적 학생은 배정원서 접수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외국 국적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갈음하는 서류인 외국인 사실 증명서(학부모, 학생 모두)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대신 제출 해야 합니다.

■ 배정방식 관련

Q. 1지망 학교에 지원한 인원이 정원 초과인 경우,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A. 정원 초과인 경우, 근거리 순위, 전·입학일자 비교, 컴퓨터 추첨 순으로 배정하며 미배정된 학생은 2지망에서 같은 순서를 반복합니다.

Q. 근거리 학교 순위는 5근거리 까지만 안내되는데, 5개만 지망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동중학군의 경우 근거리 순위는 5근거리 까지만 안내되더라도, 중학교가 10개이므로, 10개 학교를 모두 지망하여야 합니다.

Q. 원서접수 시 학군 안에서만 지망할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학군 내 학교만 지망할 수 있습니다.

- Q. 5근거리 중학교를 1지망에 지원하여도 1지망 중학교가 미달이면 무조건 1지망 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 A. 네 맞습니다. 미달 시 근거리보다 지망이 우선입니다.
- Q.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자녀 등 특별배정 학생들도 원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 A. 네 맞습니다. 일반배정대상자와 원서를 똑같이 접수합니다. 단, 체육 특기자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1지망교에는 각 위원회에서 지망이 결정된 학교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Q. 다자녀 형제가 있는 학교로 근거리 순위 상관없이 같은 학교에 갈 수 있나요?
- A. 네. 다자녀가구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자녀가 3명 이상이 있고, 같은 중학군 내에서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을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근거리 순위와 상관없이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형제자매의 중학교 재학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원서작성 시 꼭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 A. 대리 서명 방지를 위해 보호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학생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재배정은 학부모 사인 가능)
- Q. 거주지 이전 예정자일 경우 원서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2023년 2월 말까지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거주지 이전 예정지로 근거리를 부여받고 싶은 학부모님은 <서식 1-10, 1-11>의 입주예정자 확인 각서, 증빙서류인 매매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추가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두 학생이 동일 중학교를 1근거리로 받았을 경우, 해당 중학교로부터 더 가까이 거주하는 학생이 유리한가요?
- A. 아닙니다. 근거리 순위표에 측정값과 관계없이 두 학생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상대적 근거리 개념)
- Q. 거리 측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A. 학생의 실제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 5개까지만 측정하고, 실거리는 아파트 동 출입구 또는 단독주택 정문에서 중학교 정문 또는 후문 까지 통행로의 도보거리를 측정합니다.

Q. 다자녀 가구 학생, 즉 18세 미만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학년도 개시일 기준 2023년 3월 1일 현재,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일 경우 해당합니다.

Q. 쌍둥이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A. 일단 쌍둥이는 우선배정이 아니며 일반배정입니다. 맏이가 배정된 중학교에 동생이 추가배정 되거나 동반 탈락하는 개념이며, 쌍둥이를 같은 중학교에 배정하길 원할 경우 배정원서에 쌍둥이 란을 작성해 주시고, 원치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배정원서 추가접수 관련

Q. 부천시 배정원서 제출 후 부천시 관내로 이사(이사 예정)한 경우는?

A. 거주지 이전 등본 또는 거주지 이전 예정 부동산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고 배정원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정정 기간 : 2022.11.7.(월) ~ 11.25.(금) ※해당 기간까지 수시 접수

Q. 배정원서 제출 후 부천시 관내에서 전학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전출교(기존 초등학교)에서는 배정원서 삭제 신청, 전입교(전학을 받은 학교)에서는 배정원서 접수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배정원서 이관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A. 배정원서 이관 신청은 타 시·도 및 타 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 문서이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1-1	배정원서 제출 시 공문	37
1-2	배정원서철 표지	38
1-3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배정 프로그램 출력)	39
1-4	중학교 입학지원자 총괄표(배정 프로그램 출력)	41
1-5	특이 학생 명단 현황	42
1-6	전 가족 미등재 사실 확인서	43
1-7	부천시 관내 중학교 배정제외자 명단	44
1-8	배정 제외 학부모 동의서	45
1-9	거주 사실 확인서	46
1-10	입주예정자 확인 각서	47
1-11	입주 예정지 중학교 배정신청서	48
1-12	졸업자 중학교 미진학 확인서	49
1-13	위장전입 의심 대상자 명단	50
2-1	배정원서 이관 신청(공문)	51
2-2	배정원서 정정 신청(공문)	52
2-3	배정원서 추가접수 신청(공문)	53
2-4	배정원서 삭제 신청(공문)	54
3-1	선배정(학교폭력 피해 학생) 신청(공문)	55
3-2	선배정(가정폭력 피해 학생) 신청(공문)	56
3-3	특별선배정(학교 부적응자 등) 신청(공문)	57
3-4	학부모 의견서	58
3-5	담임 의견서	59
3-6	학교장 의견서	60
3-7	특별선배정 회의록	61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4-1	중학교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62
4-2	서약서	63
4-3	초등학교장 추천서	64
4-4	모집학교장 동의서	65
4-5	추천 체육특기자 체력검사 심사표	66
4-6	체육특기자 특별배정 신청자 명단	67
4-7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제출 공문(초등학교→중학교)	68
4-8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제출 공문(중학교→교육지원청)	69
4-9	체육특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0
5-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공문	71
5-2	특수교육대상자 희망자명단	72
5-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73
5-4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75
5-5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6
5-6	심의 보충 자료	77
6	다자녀 가정 학생 특별배정 신청서	78
7-1	배정 정정 신청	79
7-2	정정 사유서	80
8-1	2023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원서	81
8-2	중학교 재배정 통지서	82
8-3	부천시 중학교 배정포기서	83
8-4	학교장 확인서	84
8-5	배정포기자 알림(공문)	85
붙임 1	학부모 안내 결과 제출 양식	86
붙임 2	위장전입 검토를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자 확인 방법	87
붙임 3	관련 법령 및 규정	88

<서식 1-1> 배정원서 제출 시 공문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제 목 2023학년도 중입 배정원서 제출

1. 관련: 기획경영과 - 0000(2022.00.00.)호
2.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전체 인편 제출)

- 붙임
1.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일체(등본 포함) 00부. <서식 1-2>, <서식 1-3>
 2. 중학교 지원자 총괄표 1부. <서식 1-4>
 3. 특이 학생 명단 현황<서식 1-5>
 4. 전 가족 미등재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서식 1-6>(해당자만)
 5. 부천시 관내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 포기자 명단 및 증빙자료 1부. <서식 1-7>(해당자만)
 6. 배정제외 학부모 동의서 1부. <서식 1-8>(해당자만)
 7. 거주지 사실 확인서 및 위장전입 의심 대상자 명부 각 1부.<서식 1-9>, <서식 1-13>(해당자만)
 8. 입주예정자 확인 각서 및 입주 예정지 중학교 배정신청서 각 1부. <서식 1-10>, <서식 1-11>(해당자만)
 9. 졸업자 중학교 미진학 확인서 1부. <서식 1-12>(해당자만)
 10. 다자녀 가정 학생 특별배정 신청서 1부. <서식 6>(해당자만) 끝.

- ※ 위 붙임 서류는 인편으로 직접 제출하되, [붙임 5,6,7] 의 경우는 전자문서 회신시에도 첨부할 것
- ※ [붙임 4]의 경우 전 가족 미등재일 경우 증빙자료 등 추가 제출
- ※ [붙임 5]의 증빙자료는 합격증 사본, 합격 통보 공문 등을 첨부할 것
- ※ [붙임 7]의 경우 p82 참고
- ※ [붙임 8]의 경우 <서식 1-11>에 안내되어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 일반배정, 선배정, 특별선배정, 특별배정 모든 학생들의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배정 이외 학생들의 관련 서류는 별도 추가 제출(관련 서식 참고)

<서식 1-2> 배정원서철 표지 (반드시 두꺼운 종이에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서

	지원자	재적 인원
합계 (A+B)	명	명
남(A)	명	명
여(B)	명	명

총 _____ 권 중 _____ 권
남 _____ 명, 여 _____ 명

○○ 초등학교 (학교코드○○)

초등학교장(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지 원 자	학 교	00초등학교 6학년 반 번		지원자	학 교	반	번호
	이 름			번 호			
	주 소	(도로명 기재)					
	생년월일	(20xx.00.00.)					
	학 교 군	(0000중학군)					
학 력 (택1)	①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예정		
	②	년	월	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번호:		
	③	년	월	일	기타 초등학교 학력(6학년) 인정자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00초등학교장 [직인]			
보호자 성명	지원자 와의 관계	(부/모)	쌍둥이				
			말이 '란'	동생 수 기입	1명	(본인 미포함)	
			동생 '란'	말이 '지원자번호' 입력	111111		
				전 화 번 호 자 택 HP(부) HP(모) 학 생 ※ 선배정, 특별선배정, 특별배정, 기타 1. 학교폭력 피해학생 () 2. 학교폭력 가해학생 () 3. 가정폭력 피해학생 () 4. 특별선배정 () 5. 체육특기자 () ※ 종목명 기재 () 6. 특수교육대상자 () 7. 다자녀가구자녀 () 8. 국가유공자자녀 () ※ 보호번호 기재 () 9. 관외 거주자 () 10. 관내 타학군 거주자 () 11. 쌍둥이(희망시 체크) () ※ 해당 없을 시 미체크			

지 망 중 학 교	지망순위	1	2	3	4	5	6	보호자 확인인
	중학교명							
	지망순위	7	8	9	10	11		
	중학교명							

근거리 중학교 순 위	순 위	1	2	3	4	5	담당확인인
	학 교 명						
입학일자		2017년 3월 2일		전·입학 일자	20 년 월 일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및 교복·교과서 제공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1조에 의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이용·활용 및 제3자제공(공공목적)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3자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교복·교과서 제공에 대한 안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수집항목: 원서내용 일체 | 제3자제공: 부천교육지원청, 배정중학교 | 보유기간: 5년

2023학년도 중학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_____ (인)

보호자 _____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학 부 모 유 의 사 항

1. 주소는 등본상 전가족이 등재 되어있는 주소를 쓰거나, 거주지 이전 예정인 경우, 계약서상 주소를 쓰십시오.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배정이 취소되고 직권으로 배정)**
 2. 근거리 중학교 순위 부여 등 추천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신중히 희망 학교를 선택하십시오.
즉, 희망대로 중학교를 지원하지만, 희망자가 학교정원을 넘는 경우 근거리 상위 순위자 배정, 전학 일자 순위 배정 및 컴퓨터 추천 순으로 배정하므로 학군 내 어떤 중학교라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한번 중학교를 배정받으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4. 희망 중학교를 보호자가 확인 후 직접 인장으로 날인 하십시오.
 - [1. 중동중학군은 소명여중 공동학구인 경우 **“희망 시”** 여학생은 11지망까지 지망]
 - [2. 소사·옥길중학군은 소명여중 공동학구인 경우 **“희망 시”** 여학생은 7지망까지 지망]
- ※ 소명여중 공동학구 대상 학생은 소명여중 지망을 원할 경우, 반드시 1지망에 소명여중을 지망하여야 하며, 소명여중은 1근거리로 변경되고, 나머지 중학교의 근거리 순위는 1순위씩 뒤로 밀려납니다.
- ※ 소명여중 공동학구 대상 학생 중 지망을 원치 않으시면, 해당 학군 내 중학교만 지망하시기 바랍니다.

학 군 별 지 망 가 능 중 학 교 (총 33 교)

중학군	학교명	중학군	학교명	중학군	학교명
상동중학군 (4교) 남학생: 4지망 여학생: 4지망	부인중	송내중학군 (3교) 남학생: 2지망 여학생: 3지망	부천남중	소사·옥길 중학군 (7교) 남학생: 6지망 여학생: 6지망	범박중
	상동중		부천여중		부일중
	상일중		성주중		부천동여중
	석천중		까치울중		부천동중
중동중학군 (10교) 남학생: 10지망 여학생: 10지망	계남중	오정·역곡 중학군 (9교) 남학생: 8지망 여학생: 9지망	덕산중		부천일신중
	내동중		도당중		소사중
	부명중		부천여월중		옥길중
	부천부곡중		성곡중		
	부천부흥중		수주중		
	부천중		원미중		
	상도중		역곡중		
	심원중		소명여중		
	중원중				
	중흥중				

<서식 1-4> 중학교 입학지원자 총괄표(배정 프로그램 출력)

중학교 입학지원자 총괄표

반 별	성 별	지원대상자 수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지원자 현황										미진 학자 · 배정 제외 자 ⑦	비고				
		졸업 예정 자 ①	과년도 졸업자	소 계 ②	일반 배정 ③	선배정 및 특별선배정				특별배정										합 계 ⑥
						학 폭 가 해 학 생	학 폭 피 해 학 생	기 정 폭 력	특 별 선 배 정	소 계 ④	체 육 특 기 자	특 수 교 육 대 상 자	다 자 녀	국 가 유 공 자 자 녀		소 계 ⑤				
6-1	남																			
	여																			
	계																			
6-2	남																			
	여																			
	계																			
6-3	남																			
	여																			
	계																			
총 계	남																			
	여																			
	계																			
		미진학자 또는 배정포기자 현황 (반, 번호, 성명, 미진학(배정포기) 사유)																		

초등학교장(직인)

※ 유의사항

- ①은 초등학교 재학생 수
- ⑥은 ③+④+⑤
- ②는 ⑥+⑦의 합계와 같아야 함
- ‘비고’란은 일반배정 학생들의 특이사항이며 배정지원자 합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쌍둥이의 경우 인원수대로 합계

ex) A학생과 B학생이 쌍둥이일 경우 말이는 “2”, 동생은 “0”으로 계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5> 특이학생 명단 현황(배정 프로그램 출력)

작성자 직 교사 성명 () 휴대폰 번호 ()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1.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1지망교	가해학생 학교	가해학생 성명

2.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1지망교	피해학생 학교	피해학생 성명	전학조치전 학교

3. 가정폭력 피해 학생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1지망교	피해학생 학교	피해학생 성명	전학조치전 학교

4. 체육특기지원자(지원중학교는 해당 특기자 선발학교를 기재)

종목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지원중학교명	비고

5. 특수학급 입급아(지원중학교는 제1근거리교 또는 특수학급 설치 학교명을 기재)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제1근거리교	비고

6. 다자녀가구 학생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형제·자매 재학교	비고

7.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보훈번호	주소	제1근거리교	비고

8. 관외 거주자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9. 관내 타 중학군 거주자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현거주 학군	현 초등교 학군

10. 쌍둥이(만이기준 작성)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지망중학교											비고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	7지망	8지망	9지망	10지망	11지망			

초등학교장(직인)

<서식 1-6> 전 가족 미등재 사실 확인서

전 가족 미등재 사실 확인서

학 교 : ()초등학교

학 생 : 6학년()반 이름()

보호자 성명 : (전화번호:)

상기 학생은 첨부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에 아래의 사유로 가족(부,모)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유

※ 증빙자료는 배정지침 16p ~17를 참고하여 추가 제출(미제출 하거나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임의배정 될 수 있음)

년 월 일

보호자 (인)

위 사실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담임교사 (인)

부장교사 (인)

교 감 (인)

초등학교장(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7> 부천시 관내 중학교 배정제외자 명단

부천시 관내 중학교 배정제외자 명단

연번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포기사유

붙임 : 예·체능 중학교 진학이 확정된 공문 각 1부.

○○초등학교장(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의사항>

- ※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모든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대상 : 예·체능 중학교 등으로 진학이 이미 확정되어 공문을 수령한 경우.
- ※ 불법유학,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학 등은 **배정 제외**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배정원서 작성해야 함

학부모 동의서

소속 :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위 학생은 00중학교(예체능)에 진학 예정이므로 2023학년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부모 인

주소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9> 거주 사실 확인서

거주 사실 확인서

학생 : ()초등학교 6학년()반 이름()

보호자 성명 : (전화번호:)

주 소 :

상기 학생은 첨부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실거주지 인근 중학교에 임의 배정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부천시 아닌 경우에는 부천시 관내 중학교에 임의로 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위 사실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로 인하여 발생 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담임교사 (인)

부장교사 (인)

교 감 (인)

초등학교장(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입주 예정지 중학교 배정신청서

본인 자녀는 2023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진학을 지원함에 있어, 20년 월 일 부천시 동 소재 (APT분양(임대)/단독주택 건축/매매/전세입주 예정)으로 입주예정지 학교군내의 중학교에 배정받고자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추후 위 입주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당한 기준에 맞는 중학교에 진학토록 조치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초등학교, 중학교, 부천시중학교추첨관리위원회에서 취하는 조치를(기준에 맞는 중학교로 변경 배정 등)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임을 확약합니다.

※ 첨부서류 (학교장 원본대조필)

- ① A P T 의 경우 : 분양(임대), 매매계약서 사본
- ② 단독주택의 경우 : 건축허가서(매매계약서) 사본
- ③ 전세입주의 경우 : 전세 계약서 사본(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대체가능)

2022년 월 일

< 신청자 >

학 생 : 초등학교 6학년

보호자 :

- 현 주 소 :

- 서 명 : (인)

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13> 위장전입 의심 대상자 명단

위장전입 의심 대상자 명단

연번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	실제 거주지 주소	사유

2022. . . .

조사자 교사 성명 (인)

초등학교장 성명 (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의사항>

1. 엑셀로 작성 가능
2. 문서 자체 암호화

<서식 2-1> 배정원서 이관 신청(공문)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제 목 중입 배정원서 이관 신청(타 시군구 전출)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를 접수한 학생이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기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바, 배정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부천교육지원청에 기 제출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오니, 이를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적교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출지 학교	전출지 주소

※ 전출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명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붙임 전입학교 재학증명서(또는 이전한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초등학교장

담당교사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 접수

주소 우○○○-○○○ /홈페이지주소 :

전화 (032)○○○-○○○○ / 전송 (032)○○○-○○○○ / 공개

<서식 2-2> 배정원서 정정 신청(공문)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제 목 중입 배정원서 접수 정정 신청(관내 거주지 이전)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이 배정원서 작성 후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한(이전 예정인) 바, 기 접수된 배정원서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원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거주지 주소 (도로명 기재)		신 거주지 주소 (도로명 기재)	

- 붙임 1. 배정원서 일체(인편 제출) 00부.
2. 중학교 입학지원자 총괄표 1부.
3. 특이 학생 명단 현황 1부.
4. 입주예정자 확인 각서 1부<서식 1-10 참고>
5. 입주 예정지 중학교 배정신청서 및 증빙자료 1부.<서식 1-11 참고> 끝.

○○초등학교장

담당교사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 접수

주소 우○○○-○○○ /홈페이지주소 :

전화 (032)○○○-○○○○ / 전송 (032)○○○-○○○○ / 공개

<서식 2-3> 배정원서 추가 신청(공문)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제 목 중입 배정원서 접수 추가 신청(관외 전입)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이 배정원서 접수 기간 이후에 본교로 전입 (재취학)해 온 바, 아래와 같이 배정원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원서 추가>

지원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도로명)	비고 (추가 사유)

붙임 배정원서 일체(인편 제출)(등본 포함) 1부. 끝.

○○초등학교장

담당교사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 접수

주소 우○○○-○○○ /홈페이지주소 :

전화 (032)○○○-○○○○ / 전송 (032)○○○-○○○○ / 공개

<서식 2-4> 배정원서 삭제 신청(공문)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제 목 중입 배정원서 삭제 신청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이 중학교 배정원서를 접수하고 배정을 받기 전 부천 관내 및 타 시·군으로 전출(부천시 관내 00초로 전학)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배정원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원서 삭제>

연번	지원자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출교	전출 교육지원청	비고

붙임 전입학교 재학증명서(또는 이전한 주민등록 등본) 1부. 끝.

예시) 타시·도 및 타시·군 전학의 경우 (전출지 교육지원청에 동 학생의 중입 배정원서 접수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출교	전출교육지원청	비고
121011	홍길동	남	2004.03.17	서울 00초	서울○○교육지원청	0000.00.00일자로 전학

예시) 부천시 관내 전학의 경우(전학을 받은 학교의 담임교사는 반드시 배정원서 추가접수하여야 함)

지원자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출교	비고
121011	홍길동	남	2004.03.17	부천 00초	0000.00.00일자로 전학

○○초등학교장

담당교사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 접수

주소 우○○○-○○○ / 홈페이지주소 :

전화 (032)○○○-○○○○ / 전송 (032)○○○-○○○○ / 공개

<서식 3-1> 선배정(학교폭력 피해 학생) 신청(공문)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제 목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선배정 신청

아래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 배정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한 대상이므로 선배정 바랍니다.

학교명	지원자번호	피해학생 성명	가해학생 성명	피해학생 선배정 희망학교	가해학생 강제전학 전출교	관련공문
예)00초	882011	김 0 0	박 0 0	□□중	△△초	00학교-6430(2020.00.00.)

※ 본 자료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비공개 6호’ // 직원열람제한 ‘영구’ 처리

붙임 증빙자료(회의록, 의결서, 결과보고서 등) 각 1부. 끝.

○○초등학교장

담당교사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 접수

주소 우○○○-○○○ /홈페이지주소 :

전화 (032)○○○-○○○○ / 전송 (032)○○○-○○○○ / 비공개

<서식 3-2> 선배정(가정폭력 피해 학생) 신청(공문)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제 목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가정폭력 피해 학생 선배정 신청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 배정원서를 접수한 아래 학생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에 해당하므로 중학교를 선배정 바랍니다.

학교명	지원자 번호	성명	피해 학생 선배정 희망학교	비고
예)00초	120332	김00	□□중	

붙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1부. 끝.

○○초등학교장

담당교사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 접수

주소 우○○○-○○○ /홈페이지주소 :

전화 (032)○○○-○○○○ / 전송 (032)○○○-○○○○ / 비공개

<서식 3-3> 특별선배정(학교 부적응자 등) 신청(공문)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제 목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특별선배정 신청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 배정원서를 기 접수한 아래 학생은 교육환경을 반드시 바꾸어 주어야 할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특별선배정을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지원자번호	성명	신청 사유

- 붙임 1. 학부모 의견서 1부.
2. 담임 의견서 1부.
3. 학교장 의견서 1부.
4. 회의록 사본
5. 진단서, 상담일지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끝.

○○초등학교장

담당교사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 접수

주소 우○○○-○○○ /홈페이지주소 :

전화 (032)○○○-○○○○ / 전송 (032)○○○-○○○○ / 공개

담임 의견서

학교명 : ()초등학교

학년반 : 6학년 ()반

성 명 :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담임교사 : (인)

연락처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학교장 의견서

학교명 : ()초등학교

학년반 : 6학년 ()반

성 명 :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학교장 : (사인)

()초등학교장 (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3-7> 특별선배정 회의록

00초등학교 특별선배정 회 의 록

	교사	교사	교사	교사	부장교사	교감
결 재						
※ 회의대상자는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감 필수이며 인원제한 없음						

- 일 시 :
- 장 소 :
- 특별선배정 대상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안전
				(학교폭력 피해학생 // 학교 부적응자(신체허약, 심신미약 등) // 기타) 특별선배정 신청 대상 여부 협의

회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주장내용 - ○ 병원서류 등 증빙자료(또는 학폭관련 증빙자료) 객관적인 설명 - ○ 평소 학교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론 - 해당 학생은 0000한 사유로 특별선배정 대상에 (적합/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서식 4-1> 중학교 입학예정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중학교 입학 예정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주 소				연락처(전화)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남·여	지원 종목 (세부 종목)	
	한 자		20				
사 진 3cm×4cm 학 교 장 철인(관인) 날 인		※ 입상실적 (증빙서류가 첨부된 내용만 기재)			지 원 학 교	1지망 : 2지망 :	
학 력	20 년 월 일		초등학교 입학				
	20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예정)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초등학교장 (직인) (사인)							
본인은 20 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 체육특기자로 심사를 받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인) 보호자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2> 서약서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서 약 서

학교명 :

성 명 :

본인은 ()종목 체육특기자로 해당 중학교에 배정될 경우 체육특기활동과 학업 및 기타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며 체육특기자 배정에 관한 다음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지망학교 :
2. 배정된 후 특기종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체육특기 해지자는 일반 학생으로 현 주소지로 다시 배정한다.(단, 체육특기자 해지 신청은 특기자 심사 배정일 10일 이전 접수 분에 한함)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학부모 성명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3> 초등학교장 추천서

추천서

주 소 :

소 속 : 초등학교 학년 반

성 명 : (한글) (한자)

생년월일 :

종 목 :

위 학생은 신체적 특징으로 보아 체육 특기활동에 알맞은 체격을 갖추었으며 ()종목 선수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적성을 지니고 있어 장래가 촉망되므로 이에 체육 특기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초등학교장(직인) (사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4> 모집학교장 동의서

모집학교장 동의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 .

종 목 :

상기학생은 ()중학교에 0000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종목입력**) 체육특기자로 배정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5> 추천 체육특기자 체력검사 심사표

추천 체육특기자 체력검사 심사표

학 교 : 00학교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전 화 :
 추천종목 :

측정내용

항 목	배점	기 록	점수	측 정 위 원
신체조건	10	키 cm 몸무게 kg		성 명 : ① 성 명 : ①
기초체력 (50M달리기)	10		초	※ 종합의견
순발력 (10M왕복달리기)	10		초	
엎드려 팔굽혀펴기 (30초)	10		회	
운동기능	10			
총 점	50			

입상 실적이 없는 추천 체육특기자만 첨부(전입예정교에서 측정)

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6> 체육특기자 특별배정 신청자 명단

체육특기자 특별배정 신청자 명단

()초등/중학교장(직인)

일련 번호	출신교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구분	종목	지원교	비고
1	00초	1	1	김경기	2010.03.02	남	실적	태권도	00중	
2	00초	2	2	이부천	2010.04.01	여	추천	육상	00중	

(참고)

1. 초등학교: 지원교(중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 서류 일체와 함께 공문으로 송부
2.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체육특기자 지원 학생의 모든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서류 일체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할 것

<서식 4-7>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제출 공문(초등학교에서 지원교(중학교)에 제출)

○○초등학교

수신 00중학교장(체육부장)

(경유)

제목 0000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제출

1. 관련: 중등교육지원과-00000(0000.00.00.)

기획경영과-00000(0000.00.00.)

2. 0000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체육특기자 심사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인원	성별	남	여	계
신청 인원 (명)				

- 붙임 1. <서식 4-1>중학교 체육특기자 심사원서(인편제출) 00부.
2. <서식 4-2>서약서(인편제출) 00부.
3. <서식 4-3>초등학교장 추천서(인편제출) 00부.
4. <서식 4-4>모집학교장 동의서(인편제출) 00부.
5. <서식 4-5>추천 체육특기자 심사표(인편제출) 00부.
6. <서식 4-6>체육특기자 특별배정 신청자 명단 1부.
7. 상장사본 또는 경기실적증명서(인편제출) 00부.
8. 주민등록표등본 1부.
9. <서식 4-9>정보제공활용 동의서 1부. 끝.

00초등학교장

담당교사

교무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00초등학교-0000 (0000.00.00) 접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032-000-0000 /

/ 공개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 !

<서식 4-9> 체육특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부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학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보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는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보유 기간 경과 후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2022.09.01.~2023.02.28.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에 관련하여 상기 기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보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5-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공문

○○초등학교

수 신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초등교육지원과장)

제 목 :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서류 제출

1. 관련: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022. .)호
2.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2023 유,초,중입 특수교육대상자 희망자명단 1부.<서식 5-1>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각1부(인편제출).<서식 5-2>
 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각1부(인편제출).<서식 5-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1부(인편제출).<서식 5-4>
 5. 심의보충자료 각1부(인편제출).<서식 5-5>
 6. 주민등록표등본 각1부(인편제출).
 7. 기타 서류 (해당자만, 인편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장애인 증명서 원본 1부.
 - 시각장애 : 시력검사지, 청각장애 : 청력검사지, 언어발달평가지 1부.
 - 건강장애영역 해당자 : 의사진단서 1부, 출결확인서 1부.
 - 기 졸업자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이사에정자 :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1부. 끝.

<서식 5-2> 특수교육대상자 희망자명단

2023 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희망자 명단

연번	지역	재학학교 (출신학교)	성명	학년	생년월일	성별	선정배치		현주소
							기존	신규	
1	부천	00초	홍길동	6	00.00.00.	남	1		부천시 부흥로

- ※ 「선정·배치」 신규(처음 신청자) 또는 기존(기 선정·배치된 학생)란에 숫자 '1'로 기입
- ※ 현주소 입력시 “경기도” 미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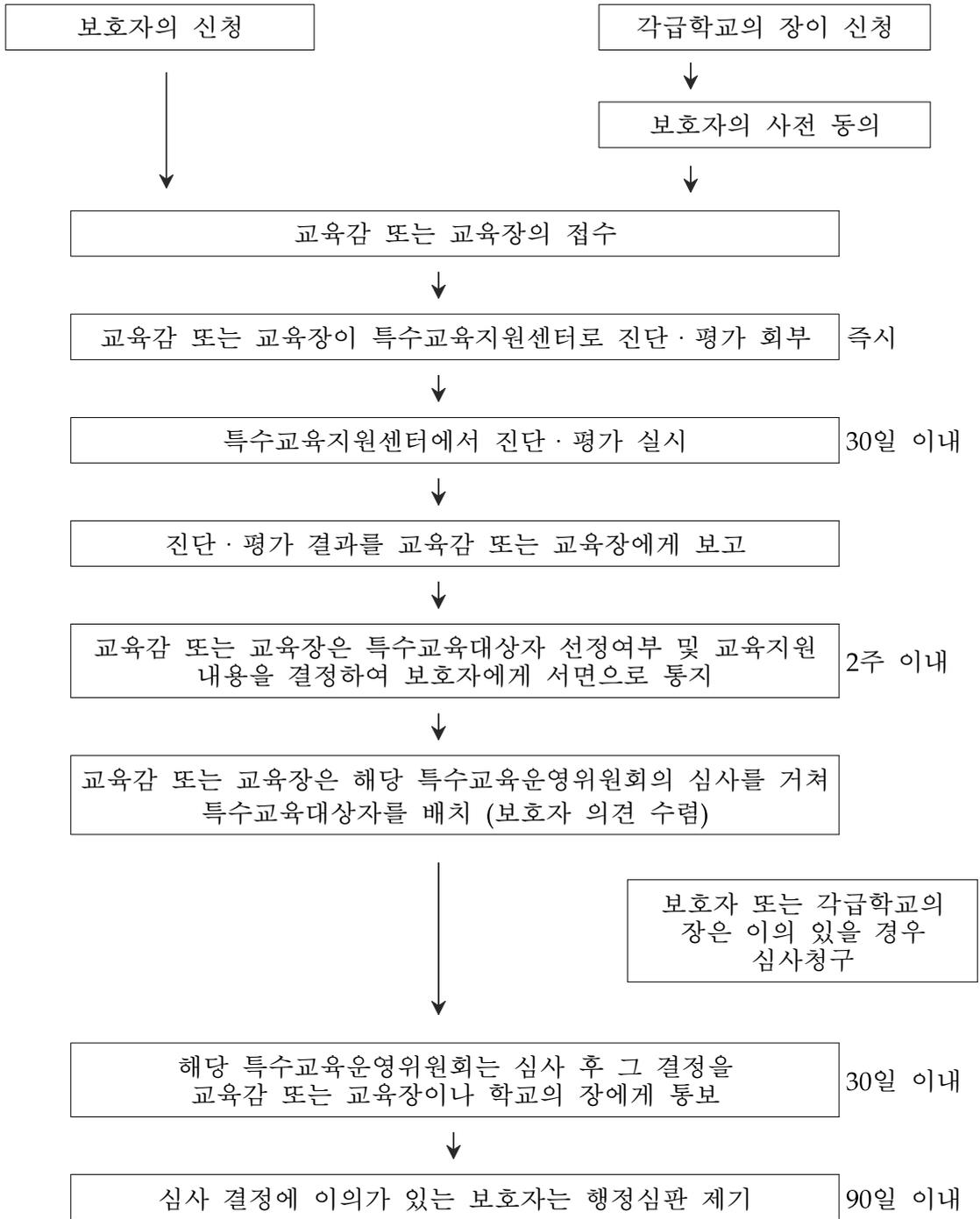
배치희망교			1희망 배치유형 (해당유형에 숫자 1로만 표시)				장애유형 (장특법)	장애유형 (복지카드)		연락처(핸드폰)		심리 평가 보고서	비고
1희망	2희망	3희망	특수 학교	특수 학급	순회 학급	일반 학급	영역	영역	등급	보호자	담임교사		
00중 (특수)	00중 (일반)	△△중 (순회)		1			지적장애	지적 장애	2	010-1111-1 111	010-2222-2 222	○	

- ※ 1희망 배치유형에 숫자 1로만 표시(○, √ 입력 안됨)
-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유형(복지카드)란에 표기하지 않음
- ※ 장애유형(장특법)란에는 아래의 표에 있는 영역 중 해당영역을 입력
- ※ 장애유형(장특법)은 공문으로 발송된(발급대상) 내용으로 작성할 것(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장애명 변경하지 않기) 장특법상 장애영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비고란에 작성할 것.
- ※ 심리평가보고서, 의무기록사본이 있는 경우 해당 칸에 ○로 표시할 것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서식 5-3>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학교가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동의 관련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나)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다)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라) 주민등록확인방법: 행정정보공공이용 업무포털 혹은 등본을 확인하여 담당교사가 서명함

<서식 5-5>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체 학부모 자필로 기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체 학부모 자필로 기재

본인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추진 계획』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에 의해 담당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 수집항목
 - 기본정보: 소속, 이름, 학년,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 성별, 주소
 - 민감정보: 복지카드 장애유형 및 등급, 발육 및 건강상태, 학업성취수준, 행동특성 및 요인, 사회생활적응능력
- 이용 및 보유기간: 2023학년도 유,초,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종료 시 까지
- 동의를 하여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가 가능합니다.

년 월 일

기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오

민감정보 처리 동의 예 아니오

■ 신청인

대상자	성명	(인)		
	학교/학년/반	학교	제	학년 반
보호자	성명	(인)	대상자와의 관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5-6> 심의 보충자료

심의 보충자료(견본)

학생명	홍길동			출신학교명	00초	
장특법 장애영역	지적장애			복지카드상 장애명(등급)	지적장애(2급)	
주소	부천시 부흥로 237, 000					
순	희망교	학급유형	통학방법	통학거리	소요시간	비고
1희망		특수학급	도보	약 432m	약 6분	
2희망		순회학급	도보	약 700m	약 20분	
3희망		특수학교	도보	약 1km	약 30분	

※ 거주지에서 1희망교까지 경로 : 지도 캡처

※ 1~3 희망교 '도보' 기준으로 통학거리 검색(네이버지도-최단거리 기준)



지도 캡처는 1희망교까지의 경로만

<서식 6> 다자녀 가정 학생 특별배정 신청서

다자녀 가정 학생 특별 배정신청서

성 명		성 별		학 교 명		학 년 반	
주 소							
희망 배정 중학교 (형제·자매 재학 중학교)							
형제 관계	순	성 명	생년월일	소속(학교명)	학 년	비 고	
	1						
	2						
	3						
	4						
	5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p>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p> <p>년 월 일</p> <p>○○초등학교장 (직인)</p>							
<p>본인은 2023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 다자녀 가정 학생 특별 배정을 받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p> <p>증빙서류: 형제·자매 중학교(1학년 또는 2학년) 재학증명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인)</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인)</p>							
<p>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p>							

<서식 7-1> 배정 정정 신청

○○초등학교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제 목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 정정 신청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인 본교 학생의 배정 결과, 아래와 같이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원자 번호	성명	성별	주소	기배정학교	정정사유

붙임 정정 사유서 1부. 끝.

○○초등학교장

담당교사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 접수

주소 우○○○-○○○ /홈페이지주소 :

전화 (032)○○○-○○○○ / 전송 (032)○○○-○○○○ / 공개

정정 사유서

학교명 : ()초등학교

학년반 : 6학년 ()반

성 명 :

상기 학생은 배정 기준에 따라 () 중학교에 배정받아야 하나,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 중학교에 배정받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정 사유(오류 내용)

년 월 일

담임교사 (인)

부장교사 (인)

교 감 (인)

초등학교장(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8-1> 2023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원서

지원자 번호

지 원 자	이름				성별	(남 / 여)	전 재적교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주소								전 화 번 호	자택
	생년월일									학생
	기배정학교	00중학교	재적초등학교(졸업교)	00초등학교				HP(부)		
	배정학교군	00중학군						HP(모)		
보호자 성명		지원자와 의 관계	(부/모)	쌍둥이		※ 선배정, 특별선배정, 특별배정, 기타 1. 학교폭력 피해학생 () 2. 학교폭력 가해학생 () 3. 가정폭력 피해학생 () 4. 특별선배정 () 5. 체육특기자 () ※ 중목명 기재 () 6. 특수교육대상자 () 7. 다자녀가구자녀 () 8. 국가유공자자녀 () ※ 보호번호 기재 () 9. 관외 거주자 () 10. 관내 타학군 거주자 () 11. 쌍둥이 ()				
지 망 중 학 교	지망순위	1	2	3	4	5	6	보호자 확인인		
	중학교명									
	지망순위	7	8	9	10	11				
	중학교명									

※ 재배정은 지망 후 정원초과 시 근거리 순위 및 전·입학일자를 적용하지 않고 컴퓨터추첨 배정 됩니다.
 ※ 재배정 원서와 배정포기서에 반드시 출신 초등학교 직인을 받아 오시고 '지망 중학교' 란은 원서접수 현장에서 결원 대상교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을 원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학 생 _____(인) 보호자 _____(인)

위 전입 사실을 확인하고 중학교 입학 재배정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 초등학교장 (직인)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및 교복·교과서 제공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1조에 의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이용·활용 및 제3자제공(공공목적)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3자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교복·교과서 제공에 대한 안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수집항목: 원서내용 일체 | 제3자제공: 부천교육지원청, 배정중학교 | 보유기간: 5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초등학교장 직인은 배정통지서를 수령 한 학교 즉, 전(또는 출신) 초등학교장 직인을 말합니다.

<서식 8-2> 중학교 재배정 통지서

학년도 부천시 중학교 배정 통지서

접수번호	111111	이름	김부천
성별	남자	출신 초등학교	00초등학교
배정중학교	00중학교		

2023. 1. 26.(목)

학부모 귀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 배정 중학교 예비소집일에 이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타시·도(군) 중학교 재배정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신 초등학교를 방문하시어 「부천시 중학교 배정포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재배정 관련 학교장 확인서

_____초등학교

제 6 학년 반 번
이 름 : (남·여)
주 소 :

위 학생은()지역의 중학교 배정을 포기하였으며,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합니다.

출신초등학교	기 배정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년 월 일

○○ 초 등 학 교 장 (직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8-5> 배정포기자 알림(공문)

○○초등학교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제 목 부천시 중학교 배정포기자 알림

2023학년도 우리 학교 졸업(예정)으로 부천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아래 학생이 타 시·도 및 타 시·군으로 전출하며 부천시 중학교를 포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지원자 번호	이름	성별	기배정중학교	전출지 주소	전출 교육지원청

붙임 부천시 중학교 배정포기서 각 1부. 끝.

○○초등학교장

수신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기획경영과장), ○○중학교장

담당교사 []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 .) 접수

주소 우○○○-○○○ /홈페이지주소 :

전화 (032)○○○-○○○○ / 전송 (032)○○○-○○○○ / 공개

<붙임 1>

□ 학부모 안내 결과 제출 양식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학생·학부모 안내 결과					
일시	장소	안내 방법 및 내용	참석대상	참석인원	비고
2022.10.19	다목적 강당	2023학년도 중입배정 가정통신문 발송 및 설명회	6학년 학부모	150명	(예시)

<붙임 3> 관련 법령 및 규정

[헌법 제31조]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0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 ②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지체부자유자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70조(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제4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대상·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제31조(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